

2百海里時代와 沿近海漁業의 再認識

崔 益 星*

- I. 200海里經濟水域宣布의 背景
- II. 200海里時代의 影響
- III. 沿近海漁業의 再認識
- IV. 沿近海漁業에 關聯된 國家施策
- V. 沿近海漁業의 問題點
- VI. 沿近海漁業 振興對策

「2百海里時代」, 「海洋分割時代」, 「資源내셔널리즘」 등의 用語가 최근 2—3年間에 各種 매스콤을 통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2百海里時代의 역센 파도는 이미 世界의 主要漁場을 거의 휩쓸고 있다. 2百海里漁業專管水域 또는 經濟水域을 設定한 國家는 總對象 沿岸國 129個國中 70個國에 이르고 있으며(78年末 現在), 그 適用海域은 北太平洋의 거의 全水域, 北大西洋과 北海, 北東印度洋의 대부분, 아프리카大陸沿岸水域, 南美大陸周邊水域을 비롯해, 南太平洋水域을 포함함으로써 世界主要漁場 水域은 이미 2百海里 時代로 突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實情이다.

이 글에서는 2百海里時代의 背景과 그 影響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이러한 어려운 狀況 아래서 우리나라 沿近海漁業이 나아갈 進路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2百海里經濟水域宣布의 背景

18세기 以來 確立된 領海 3海里와 公海自由의 原則은 第2次世界大戰이 끝날 때까지는 잘 지켜왔으나 終戰直後인 1945年 9月 28日 美國大統領 트루만이 「美國에 隣接하는 大陸棚의 天然資源의 開發에 對한 宣言」과 「美國에 隣接하는 近海水域에 對한 漁業保存水域設定」이라는 2個의 宣言을 發表함으로써 海洋分割時代, 또는 海洋2百海里時代의 幕이 열렸다. 그러나 원래 트루만大統領이 宣言한 大陸棚宣言과 漁業保存水域 宣言은 오늘날의 經濟水域 또는 漁業專管水域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 宣言에서는 大陸棚의 下部賦存資源의 開發權을 主張한 것으로 그 上部水域에 對한 領海의인 管割權의 主張은 아니었다. 그러나 各國은 이 宣言을 각기 自國에 편리하게 해석함으로써 점차 그 概念은 專管水域 내지 領海化의 主張으로 바뀌었다.

트루만宣言에 제일 먼저 反應을 보인 나라는 바로 이웃 나라인 멕시코이다. 멕시코는 同年 10月 29日 大陸棚의 生物資源의 保存에 必要한 漁業獨占水域의 設定을 宣言하였고, 파나마가 뒤를 따랐다. 南美의 페루, 칠레, 에쿠아도르 등

* 水産廳水産局長.

太平洋沿岸 3個國은 Andes 山脈이 海岸에 따라 縱走하고 있어 大陸棚이 거의 發達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大陸棚面積이 廣大한 美國이나 멕시코와 같이 大陸棚宣言形式을 取하지 않고, 沿岸 2百海里 幅內에 있는 漁業資源은 그 沿岸國의 管轄權에 屬한다는 산디아고 宣言을 1952年 8月 8日에 발표했는데, 여기서 소위 2百海里說이 發端된 것이다. 이들 3個國이 2百海里란 숫자를 내세운 이유는 페루, 칠레, 에쿠아도르가 연한 바다에는 洪블트寒流가 南에서 北上해 오고 있으며 그 海流 속에는 水産資源 특히 멸치資源이 풍부하여 (數年前까지만 해도 페루 한 나라의 멸치 漁獲量이 1千萬 t 以上에 달할 만큼 資源의 寶庫이다) 이 洪블트 海流 속에 포함된 生物資源은 이들 沿岸國들이 그 管轄權을 갖는 것이 當然하다는 主張과 함께 이 海流가 흐르고 있는 범위가 대체로 2百海里라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 後 上述한 大陸棚資源管轄權과 2百海里 漁業專管水域設定 風潮는 라틴 아메리카諸國을 위시하여 亞阿大陸의 開發途上國間에 高潮되어 30海里說, 60海里說, 100海里說 등으로 脚色되고 宣言되면서 海洋의 分割時代를 부채질해 나갔다.

이 風潮에 對하여 1967年 UN 總會 席上에서 勇氣있게 排戰하면서 새로운 海洋秩序의 確立을 主張한 것이 말타 代表 이다. 그는 「大陸棚以遠의 海底는 어느 한 나라의 領有로 해서는 안되며 그 開發利益은 人類全體를 위해, 즉 貧困國의 發展을 위해 使用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여 開發途上國側의 支持를 얻었다. 그 結果 유엔內에 海底平和利用委員會가 發足하고, 이어 1970年 유엔總會에서는 第3海洋法會議의 開催決意가 成立되어 現在까지 거의 每年 年次行事처럼 會議에 會議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지금까지 아무런 結論을 얻지 못한 채 지난 3月

中旬부터 다시 第8期 會議가 제네바에서 開催되고 있고, 6月頃에 場所를 移動하여 뉴욕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 이러한 不振한 海洋法會議의 結果를 기다리지 못한 채 各國은 大陸棚資源의 開發과 深海底資源發掘을 위해 自國의 利益을 앞세우면서 獨自의인 行동을 벌여 실질적인 海洋 2百海里 時代로 접어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1977年 3月 1日을 기해 發効된 美國의 「76年 漁業保存管理法」과 소련의 「最高會議幹部會令」은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根幹을 이루고 있던 北太平洋에 있어서의 明太漁業의 漁場상실을 가져오게 했다. 잇따라 宣布된 日本(77年 7月 1日)과 北傀의 (77年 8月 1日) 2百海里 漁業 내지 經濟水域 實施는 (日本은 韓國과 中共海域에는 不適用) 結果의으로 우리나라 周邊國中 中共을 除外한 國家들이 이미 2百海里 時代에 들어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中共 또한 언젠가는 2百海里를 宣言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이에 對한 辛중한 對應策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II. 2百海里時代의 影響

2百海里가 全世界的으로 實施된다면 世界海洋의 40%, 世界主要漁場의 90% 以上이 그 속에 포함된다. 단순히 面積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世界 全海洋의 60%가 남아 있는 計算이되나 實質의인 漁場面에서 볼 때 距岸 2百海里 以內의 大陸棚上은 陸地로부터 流入되는 各種營養分이 풍부하고, 光合成作用에 의한 植物性 浮遊生物, 動物性 浮遊生物이 繁殖하며 水産動植物의 棲息場이 되고 있어 魚類의 産卵 育成場이 되므로 거의 모든 魚種의 전통적인 主要漁場이 되고 있다.

따라서 2百海里 宣言으로 인해 그 나라 沿岸水

表 1 遠洋漁業의 年度別 伸張

年 度	出 漁 船		漁獲量 (M/T)	輸出額 (千 \$)
	隻 數	G/T		
1962	5	555	657	209
1967	180	41,236	40,484	12,582
1970	278	75,793	89,621	37,663
1971	351	108,850	159,307	55,103
1972	455	159,814	224,135	68,032
1973	552	208,410	360,636	118,640
1974	757	298,494	418,380	136,316
1975	833	316,090	565,593	183,414
1976	849	334,010	724,260	262,545
1977	850	315,222	595,927	313,486
1978	816	308,883	566,223	294,674

域에 入漁하려는 外國漁船은 그 沿岸國으로 부터 入漁許可證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入漁許可證의 入手給付로서 높은 比率의 入漁料를 支拂한다든가 이에 相應하는 各種經濟協力을 提供 해야하며, 그 뿐 아니라 잡을 수 있는 魚種과 漁獲量에 엄격한 規制를 받게 되고 이를 違反한 漁船은 沿岸國의 裁判에 회부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狀況 아래서 우리 나라 遠洋漁業이 입게 되는 影響은 대체로 얼마나 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과거 10여년간에 長足の 發展을 거듭, 1976年度에는 그 절정을 이루어 우리나라 總漁獲量 407千%의 30%를 生産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世界 第7위의 水產物 生産國, 水產物輸出에 있어서는 世界 第5位の 輸出國으로 받돋움했다.

1977年度에 들어 와서 美國, 캐나다, 소련의 잇따른 2百海里 漁業專管水域宣言으로 北洋漁場, 특히 소련水域에 포함되는 캄차카의 明太漁場을 상실하여 그 生産도 減少一路를 걸게 되었다. 北洋漁場 뿐만 아니라 大西洋岸의 스페인領 라스팔마스를 基地로 한 遠洋트롤漁業, 南美수리남

주변어장에 있어서의 새우漁業, 호주, 뉴질랜드 近海 漁業進出에의 制約 등 各種規制도 強化되고 있어 우리의 遠洋漁業은 지금까지와 같은 伸張은 고사하고 現水準 維持에만도 全力을 投球해야 할 立場에 있다.

한편 海外漁場의 規制強化로 既存漁場에서 밀려난 一部 우리 遠洋漁船團이 우리나라 近海水域에 廻航·運用될 氣味가 있어 近海漁業의 基盤마저 위협할 憂慮가 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水產廳 當局이 基本方針을 定하여 規制하고 있기는 하나 各國의 2百海里宣言은 結果적으로 우리나라 漁業界 全般에 걸쳐 強한 影響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對應策으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方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對外方案—沿岸國과의 海外漁業 協力の 強化를 통한 既存漁場의 確保 및 新漁場 開發

○對內方案—沿近海漁業의 再認識을 통한 沿近海漁業振興과 漁民所得增大

本稿에서는 對內方案에 對해서만 略述해 보고자 한다.

Ⅲ. 沿近海 漁業의 再認識

世界各國이 經濟水域을 宣布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서 國內 賦存資源으로서의 沿近海漁業 資源은 再評價되어야 하며, 食糧供給產業으로서 가장 안정된 水產物 供給源이 沿岸漁業이라고 하는 점이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79年度 漁業生産目標은 265萬%, 輸出은 770百萬달러이며 漁業別 生産 및 輸出比는 〈表 2〉와 같다.

表 2 重要漁業別 生産 및 輸出計劃 (1799年度)

生 産			輸 出		
계	265 萬%	100%	계	770 百萬弗	100%
沿岸漁業	93	35	沿 近 海	390	51
近海漁業	66	25	遠 洋	310	40
養殖漁業	53	20	漁 網	70	9
內水面漁業	4	1.5			
遠洋漁業	49	18.5			

(表 2)에서 보듯 遠洋漁業을 제외한 漁業의 比重은 80%나 點하고 있으며, 그 從事者가 80萬名이나 된다. 또한 沿近海漁業의 重要性은 自然保護와 關聯되어 擡頭되는 公害問題와도 直結되고 있다. 沿近海漁業은 公害防止産業이다. 좋은 예로서 馬山灣의 毒水帶現象이 나타났을 때 水産業은 제일 먼저 公害現象을 알려주는 尖兵役割을 했다. 또한 水産業은 自然環境을 파괴하지 않는 自然狀態 그대로를 維持活用해 가면서 發展시킬수 있는 産業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全沿近海漁場의 牧場化, 資源造成과 合理的 漁業管理로서 「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란 施策이 10年前부터 제창되어 水産施策의 基本方向으로 設定, 推進되고 있다. 그러나 漁業의 一般的 性向은 自然物의 増産보다 一攫千金의 꿈이며, 따라서 漁業間의 마찰과 調整, 漁業秩序의 紊亂, 資源의 枯竭을 招來케 할 憂慮가 있을 뿐만 아니라 持續的 生産基盤을 破壞하기 쉽다. 따라서 漁業團束이 不斷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積極的인 資源造成策으로 主要魚種의 産卵場, 稚魚育成場의 造成을 爲한 人工魚礁, 古船魚礁의 投下事業의 擴大, 人工孵化 및 放流 등을 通하여 資源의 増養殖事業을 大大的으로 擴充시켜 一次的으로 沿岸漁場을 牧場化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海里 經濟水域設定에 對備하여 漁業生産의 持續的 生産確保, 經營安定

側面에서 水産業의 再整立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IV. 沿近海 漁業에 關聯된 國家施策

沿近海 漁業에 關聯된 國家施策으로서는 1977年 9月 10日 大統領閣下의 裁可를 받아 5個年計劃으로 推進中인 「沿近海漁業 振興計劃」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77년부터 81년까지 5個年간 2,398億원을 投入하며, 沿近海漁業을 振興시키고자 하는 방대한 計劃이다.

經濟企劃院, 財務部 등 關係部處와의 合議를 거쳐서 作成된 이 계획의 主된 內容은 増殖 및 資源造成에 196億원, 漁船建造에 814億원, 裝備改良에 153億원, 漁港建設에 690億원, 水産物流通構造改善에 368億원, 船員共濟 義務化에 8億원, 生産指導 및 技術普及事業에 12億원, 漁業無線局施設에 18億원, 指導船建造 및 代替에 110億원, 漁村保護事業에 29億원을 投入하게 된다.

또한 78년 4월 21일 빈번한 漁業海難事故를 防止하기 위해서 大統領閣下의 裁可를 받아 構成된 「沿近海漁業 漁船事故防止 綜合對策」이 마련된 바 있다. 이것은 沿近海漁業 振興計劃을 補完하는 計劃으로 沿近海漁民의 福祉増進을 위하여 東海「大和堆」漁場, 黃海 및 東支那海漁場에 大型指導船 및 福祉母船을 配置해서 他國船의 漁撈侵犯 監視와 우리 漁民의 安全操業保障, 現地氣象, 海況觀測, 漁場指導, 物資의 供給, 긴급患者의 治療, 後送, 船團操業 등을 擔當케 하는 計劃이다. 또 地域別 綜合開發計劃으로서는 西海 5島對策, 濟州島 水産開發計劃, 各道 水産開發計劃이 마련되었으며 其他 水産行政 補完制度도 推進中에 있다. 이와 같은 一聯의 施策을 綜

합하면 다음과 같다.

1. 沿近海漁業 振興計劃(1977~81)

가. 增殖 및 資源造成	19,597百萬元
1) 增殖開發	16,347 "
2) 資源造成	3,250 "
나. 漁船建造	81,372 "
다. 裝備改良	15,276 "
라. 漁港築造	69,001 "
마. 水產物流通構造 改善	36,809 "
1) 水產物價格支援 事業	6,388 "
2) 流通施設	30,421 "
바. 船員共濟 義務化	773 "
사. 生産技術指導 普及	1,155 "
아. 漁業無線局 施設	1,846 "
자. 指導船建造 및 代替	11,016 "
차. 漁村副業事業	2,911 "
總 計	239,756 "

2. 漁船事故防止 綜合對策

가. 沿近海 福祉母船 1,000 t級 3隻 建造, 漁船의 大型化, 裝備現代化推進

나. 船團指導, 漁港施設, 海難救助, 災害補償等 一聯의 措置

3. 地域別 綜合開發計劃

가. 西海5島 對策

나. 濟州島 水產綜合開發計劃(124億 投入, 1979~83年)

다. 各道水產開發計劃

4. 其他 水產行政 體制 補完 措置

V. 沿近海漁業의 問題點

以上에서 우리 나라 沿近海漁業의 現況을 살펴 보았으며, 沿近海漁業의 重要性에 비추어 國家的 施策으로 推進코자 할 방대한 物量과 內容이 包含된 沿近海漁業 振興計劃의 內容도 잠시 살펴 보았다. 沿近海漁業을 發展시키는데 있어 現在 가장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 하나 들여보기로 하자.

첫째, 沿近海漁業資源을 파괴하고 漁業秩序를 紊亂케 하는 不正漁業의 盛行과 이로 인한 資源의 減少問題이다.

漁業이란 水產資源을 對象으로 이를 漁獲하는 産業이므로 그 對象으로 하는 資源이 減少되고 消滅될 때 漁業自體가 成立되지 않는다. 漁業者는 漁獲에 注力하는 以上으로 그 資源의 保護, 育成에 힘을 기울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各種 不正漁業이 자행되어 水產業 및 水產資源保護令에 規定한 資源保護方案이 無視되고 있으며, 場所, 時期, 方法, 對象에 關係없는 亂獲이 행해지고 있다. 時期別로 약간의 起伏이 있기는 하나 年中 약 1,000隻의 小型機船底引網, 三重刺網, 無許可 桁網等의 不正漁船이 沿岸資源을 加速的으로 위협하고 있어 이의 根絶은 時急하고도 重大한 問題가 되고 있다.

두번째 問題點은 公害問題이다.

臨海工團의 設立, 臨海發電所 建設, 그리고 大的인 干拓事業, 빈번한 海上運送에 依한 航路의 擴張 등으로 相對的으로 漁場은 狹少化되고, 漁場環境에 變化가 닥치고 있다. 이로 인해 近間에 와서 到處에서 漁業紛爭이 일어나 沿岸漁場의 漁業權을 둘러싼 補償問題로 發展하고 있다.

세째는 沿近海漁業資源 및 漁場의 限定性이다.

가까운 隣接國인 소련이 1977年 3月 1日 經濟水域을 宣布한 바 있고, 日本의 경우 1978年 7月 1日字로 施行하고 있으며, 北傀도 1978年 8月 1日字로 이것을 宣布하였다. 이와 같이 周邊國家들이 經濟水域을 宣布함으로써 우리의 進出漁場이 매우 制限을 받게 되었고, 또 資源面에서도 問題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 國民에게 傳統的으로 값싼 大衆魚로써 普及되어 온 명태漁場의 喪失은 國民의 蛋白食糧 供給面에서도 큰 問題가 되고 있다.

네째로 隣接國家와의 漁業紛爭惹起 및 安全操業 確保問題다.

이것은 經濟水域 200海里와 關聯하여 境界劃定問題와 漁撈方法 및 資源의 管理 等を 둘러싼 國際紛爭으로까지 擴大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問題이다. 예를 들어 中共과 우리나라가 200海里를 各各 設定할 때 반드시 問題點으로 擡頭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基線基點을 어떻게 定할 것인가에 따라 兩國間에 紛爭이 惹起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협받는 사태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번째 問題點은 一部 企業漁業을 除外하고는 아직도 유치한 漁船裝備 및 漁船의 老朽化로 인한 漁船事故의 頻發과 漁業經營의 零細性問題를 들 수가 있다.

아직도 沿岸에는 船齡이 20年 以上이나 되는 老朽된 小型船과 無動力漁船이 많다. 이러한 老朽船의 代替建造와 漁業裝備의 改善없이는 優秀船員의 確保에 隘路가 있으며 陸上產業의 擴充에 따라 離船現象이 深化되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季節的 地域的인 現象이긴 하나 이제 浦項, 蔚山 等の 工業團地 隣近漁港에서는 漁船員의 安

定確保問題가 크게 問題視되고 있으며, 根本的인 對策없이는 이러한 傾向은 더욱 深刻해질 徵兆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水產物流通 構造의 취약성과 漁業基本施設 및 그 關聯施設의 不足도 커다란 問題이다.

水產物 利用 加工施設은 經營上 收支採算을 理由로 釜山을 비롯하여 仁川, 麗水 等 主要 漁港에만 密集施設하고 餘他 漁港에서는 不足되고 있다. 漁港, 防波堤, 給水施設과 造船修理, 船需品供給 等 施設도 아직까지는 不充分하여 漁場에의 適期出漁와 漁獲物의 원활한 揚陸, 輸送面에 問題點이 되고 있다.

以上的 問題點들이 어느 정도 解決된다 하더라도 漁業의 生産基盤인 水產資源의 增大, 適正管理는 基本要素이며, 沿近海漁業의 適正規模化와 재편성은 合理的으로 앞날을 展望하는 立場에서 不斷히 補完되어야 할 事項이다.

VI. 沿近海漁業 振興對策

沿近海漁業 振興計劃의 推進方法은 앞서 말한 沿近海漁業의 振興計劃에 대한 各種 細部計劃을 마련하고 이를 補完해감으로써 推進해 나가야 되겠으며 이의 具體的 推進內容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沿近海 資源의 適正判斷과 資源 造成事業의 積極化를 들 수 있겠다. 1978年 4月末로 우리나라도 12海里의 領海를 宣布하여 實施하고 있는 바 우리의 主權이 미치고 主要水產物의 번식 성육장이 되는 領海內의 淺海漁場을 牧場化하자는 것이 우리의 첫째 構想이다. 經濟水域 全體를 牧場化한다면 더욱 理想的이나 이것은 現단계로서 不可能하고, 12海里의 벨트를 牧

場化 하는 事業만이라도 대대적으로 展開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1975年 12月의 水産業法 改正時 沿岸水面의 綜合的인 漁場 利用開發과 合理的인 漁場 및 資源管理를 위한 制度上의 根據를 마련했다. 또 漁業의 民主化를 위해 地先漁民에게 地先漁場을 주고자 지금까지 地區水域이 가지고 있던 沿岸 第1種 共同漁業權을 地先漁村契로 移管시킴으로써, 地先漁場에 對한 애착심과 함께 自己部落 앞 水面資源을 스스로 保護 管理하면서 漁獲하자는 새마을 精神과 自然 保護思想을 고취시키는 기틀을 確立한 바 있다. 이 밖에 미약하기는 하나 全國海岸線을 따라 人工魚礁를 施設하여 主要魚貝藻類의 產卵, 成育場을 人爲的으로 造成해 주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有用魚貝藻類 種苗의 人工부화 및 그 放流 事業을 促進하기 위해 計劃期間에 每年 1個所의 種苗培養場施設을 建設할 計劃 아래 推進되고 있다.

둘째 課題는 不正漁業의 根絶과 漁業秩序의 確立이다. 現在 全國的으로 約 1千隻의 各種 不正 漁船이 團束의 눈을 피하여 [어업질서를 무시한 채 操業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이들 不正漁船이 잡는 漁獲量을 隻當年間 50%으로 假想한다면 약 10萬%의 稚仔魚들을 亂獲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 숫자는 種苗培養場을 數百個 만드는 國家財政浪費와 맞먹는 것이 된다. 이들 不正漁業者의 亂獲으로 황폐해질 연안어장 環境의 재편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5~6年에 가까운 오랜 時日과 人工魚礁 數萬個의 投入豫算이 必要하다. 不正漁業에 對한 團束은 꾸준한 努力과 함께 이에 從事하고 있는 漁民들에 대한 轉業對策 역시 강구 推進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水産廳에서 이를 위해 水産資源의 主產卵 繁殖期인 每年 4~5月에 內務, 法務部 등의 協助를 얻어 全國的이며 集中的인 不正漁業團束을 實施하고 있다.

表 3 年度別 人工魚礁 施設事業 實績 및 計劃

(單位: 百萬元)

年度別 種類別	1971~78實績		1979 計劃		1980 計劃		1981 計劃		備 考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人工魚礁 (콘크리트)	19,020 個	296	4,000 個	110	24,000 個	840	48,000 個	1,680	
古 船 魚 礁	66 隻	26	—	—	—	—	—	—	

表 4 種苗培養場施設 現況 및 計劃

시설년도	명 칭	위 치	시 설 비	규 모		생 산 능 력
				부 지	건 평	
'78	주문진 종묘 배양장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245,715千원	1,924평	491.1평	전 북: 50만미 우렁쟁이: 5만미 다 시 마: 5만미 미 역: 5만미 돌 김: 100상자
'79	전남 종묘 배양장	전남 여천군 돌산면	290,940 千	4,134평	611평	
'80	경남	미 정	650,000 千			
'81	제주	미 정	550,000 千			
계	4개소		1,736,655 千			

세번째는 養殖・指導와 災害豫察制度의 強化이다. 農漁民 所得増大事業의 一環으로 推進된 전국 淺海干潟地 開發을 위한 增・養殖事業보급은 굴 수하식양식을 비롯하여 해태, 미역, 백합, 피조개 등 주요 어패류의 養殖을 케도에 올려 놓아 49萬%의 생산을 올리고 있으나, 臨海工團地域 漁場에서의 독수대(赤潮現象)의 發生, 漁場過密로 인한 病害의 發生等으로 인한 被害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위한 指導事業의 강화내지 漁場環境에 대한 연속적인 調査實施로 災害豫察 및 防災指導가 必要한 實情인 것이다.

다음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再評價와 漁業의 再編成이다. 各國의 200海里 經濟水域 設定은 우리 漁業構造와 그 勢力面에서 재편성 되어야 하며 이 작업을 위해서는 主要沿近海漁業 資源에 대한 올바른 評價가 先行되어야 하고 그 評價에 따라 最大持續生産量(Maximum sustainable yield)을 定하여 操業할 수 있는 漁船의 數와 漁獲量을 定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漁業을 TO化하여 規制하는 것도 資源의 維持管理를 위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로 원활한 船員需給과 優秀船員의 養成問題이다. 지금까지의 선원 確保問題는 자기 船主들이 개별접촉을 통해 쓰내기 船員들을 確保해 왔으나 高賃金時代의 優秀船員 確保는 組織的이며 合理的인 후계자의 養成 없이는 不可能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10여個의 水産界大學, 專門學校 및 高校가 있으나 이들 學校 졸업자 가운데 實際로 漁業에 從事할 사람이 어느 정도될 것인지를 생각할 때, 在學중에 各種기초학과의 교육도 重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現場實習과 기술인력의 양성을 통해 취미와 使命意識을 심어

주는 것 역시 重要하다 할 것이다. 또 船長, 漁撈長, 機關長, 通信士, 魚群探知技術者 등의 養成은 短期 코스로 大量養成하는 問題를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專門化된 短期코스 에 의한 中堅船員養成機構는 業種別組合에서 需給計劃을 세워 不足한 船員을 養成시켜 供給해 주도록 함과 동시 勞使間의 圓滿한 調整 役割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번째로 漁船의 動力化, 裝備의 現代化, 安全操業의 確保等에 관해서는 賃金上昇과 人力不足 等으로 새로운 側面에서 검토가 必要하다. 安全操業은 現在 政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나 이것은 船主自身들도 스스로 自己 漁船에 對한 安全操業規則를 講究하는 한편 各種 漁業共濟에의 加入으로 만일의 事故에 對備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高賃金 時代에 對備하고 優秀人力 確保策의 一環으로 漁船 및 漁撈裝備의 現代化와 省力化에 대한 研究와 改善 역시 時急히 해결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沿岸漁業에 對한 公害對策이다. 高度産業化 時代에의 移行은 結果의 所以로 臨海工業團地의 建立과 工場 및 都市廢水의 流入을 招來하고 이로 인한 漁場의 荒廢 및 漁業紛爭이 빈발해 질 것을 생각할 때 이에 對한 政策的인 施策 講究는 時急하다 할 것이다. 水質公害問題解決은 철저한 監視機構의 設置로 被害擴散을 最少로 줄이는 한편 被害發生時에는 應分의 賠償으로 漁民의 生計에 支障을 주지 않도록 制度的인 解決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며, 原因不明者에 의한 油濁被害에 대한 賠償을 위한 共濟制度의 設置, 運用도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